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58호 2023. 12. 1(금)

선 람	기관의 장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3-177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회 람																				
--------	--	--	--	--	--	--	--	--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4

남원시 고시 제2023 - 177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안 제2조제3항)

(현행) 2023년 12월 31일 (변경) 2028년 12월 31일

3. 입법예고기간 : 2023. 12. 1. ~ 12. 3. (3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업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dn8527@korea.kr), 직접방문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업지원과(☎063-620-6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기업지원과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안 제2조제3항)

(현행) 2023년 12월 31일 (변경) 2028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1. 30. ~ 2023. 12. 1. (2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기금의 설치) ①·② (생략)</p> <p>③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2028년 12월 31일</u>-----.</p> <p>-----</p> <p>-----</p> <p>-----</p> <p>-----.</p>

붙임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자치법규명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